환경부고시 제2017-4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

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의 유효기간) 제2조에 따른 한계배출기준 중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과 폐기물 소각시설의 한계배출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한계배출기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한계배출기준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계배출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배출기준은 한계배출기준의 효력이 종료된 당시의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별표]

한계배출기준(제2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60
황산화물(SO_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0
질소산화물(NO_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2) 폐기물 소각시설(영 별표 1 제3호의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40
황산화물(SO_2)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50
질소산화물(NO_2)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일산화탄소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90

비고

1.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이 가목1) 또는 2)에 따라 산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한다)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2.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 및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적용을 받는 시설: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농도기준

2) 1) 외의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6)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나. 규칙 별표 15 제3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가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최대배출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